

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입안계획서

1. 행정규칙명

-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 고시 제2024-20호, '24.4.24.)

2. 개정사유

- 통관목록 작성 요령 신설로 특송업체 등에게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, 정확한 수출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
- 우편물목록의 정의와 서식을 신설하고,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명시화하여 수출 우편물 통관절차 개선
- 영세·중소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 및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
- 수출업계의 건의를 반영, 다수 수출자의 전자상거래 판매 물품을 1인 구매자에게 간이수출 시 합배송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

3. 주요 개정내용

① 통관목록 제도 개선

- (통관목록 작성 명확화) 목록통관 시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 목록 서식 개정(별지 제6호서식) 및 작성요령 신설(별표14)
 - ※ 항목별 작성요령을 마련하여 통관목록의 정확한 작성을 안내하는 등 신고인의 오기재와 혼란을 방지하고, 기재사항을 표준화하여 업체 편의 증진
- (기업편의 제고) 목록통관 수출시 수출실적 인정을 용이하게 개선(국세청과 전산 연계 등)하고, 통관목록 품목정보로 수출 트렌드 분석 등 수요자 맞춤형 통계 제공 기반 마련

② 우편물목록 제도 개선

- (특례규정 정비) 우편물목록 제출 생략을 가능하게 규정한 고시 조문은 상위법(관세법 제257조*)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삭제(제42조)
 - * 통관우체국의 장이 우편물을 접수하였을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(절차 마련) 우편물목록 정의(제2조제6의2호)·서식 신설(별지 제6의2호) 및 제출 세관·방법을 명시하는 등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우편물목록 제출 절차 마련(제37조의3제1항)
- (수출실적 인정) 통관목록과 같이 우편물목록에 의한 수출시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 마련(제37조의3제2항)

③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제도 개선

- (금액 상향) 물가·소득수준 상승 등 경제 수준 변화를 반영하고 전자상거래 간이수출* 활성화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기준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(제35조의2)
 - * 일반수출신고 대비 신고항목 간소, 목록통관 대비 무역금융·수출실적 인정 용이 등

④ 전자상거래 간이수출(목록변환)신고 물품의 적재이행 관리 개선

- (동시포장 근거 신설*) 수출자가 다른 전자상거래 물품을 1인의 구매자에게 간이수출신고를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, 하나의 화물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(제51조제2항)
 - * 수출고시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간이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대상

⑤ 조문 정비

- 현행 제도·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불명확·부적합 조문 정비(제2조제5호, 제7조제2항제2호, 제7조의3, 제36조제1항제8호, 제44조제2항)

- (목록통관 정의 등) 무역통계 미반영 여부에 대한 근거가 없고, 목록 통관도 환급* 및 정정 등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문 정비

* 관세법 제106조의2(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) 제1항제3호

- (목록통관 정정/취하/각하) 통관목록에 의한 수출 시 정정·취하·각하 행정행위의 절차적 근거 마련

4.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 참조

5. 시행일자 : 2024. 00. 00.

6.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처 :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
- 담당자 : 이영주 사무관(☎042-481-7832), 김진성 주무관(☎042-481-7843)
- 제출기한 : 2024. 6. 24.(월)
- 제출방법 : 이메일(ironies89@korea.kr), 팩스(042-481-7839)